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4. 28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공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철홍, 사무관 하재범, 주무관 김대영 • ☎ (044)201-4505, 4508	
보 도 일 시	2016년 4월 29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4. 29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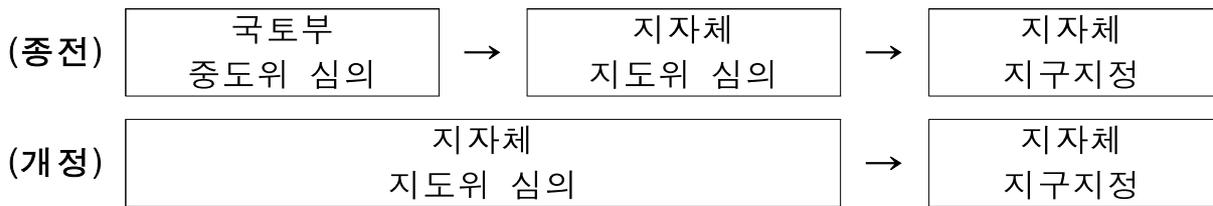
##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

### - 「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」 시행(4.29) -

- 시·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개정안을 4.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(16.3.30.,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·시행),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,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- 다만,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·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「개발제한구역법령」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였다.

<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비교 >



- ② 「주거급여 지원 강화」를 위해 매입·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\*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\*\*을 부여하도록 하였다.

\*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  
 \* 가산점 기준: (80%이상) 5점, (65%~ 80%) 4점, (50%~65%) 3점, (30%~50%): 2점

- ③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.
- ④ 국가,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, 85제곱미터(m<sup>2</sup>)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%로 정했다

□ 개정안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며,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개정보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사무관(☎ 044-201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